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20 - 33 - 158호

안 전 명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6. 4.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위탁·보관(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금액 : 3,0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유

I.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IT교육 서비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19.3.5.기준)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매출액				

※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피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신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신인에 대한 현장조사(2019. 2. 21.)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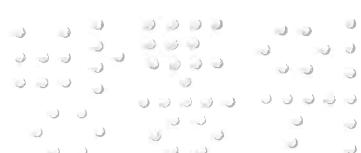
3. 피신인은 및 등 IT 활용능력 자격 시험접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9. 3. 5. 현재 이용자 경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신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정보 (유료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건
(휴면회원)	상 동		건
합 계			건

나. 개인정보 유출경위

1)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



- 2019.1.25. 15:29 합격자 대상 안내 메일 발송
 - 2019.1.26. 9시 고객문의 메일을 통해 유출사실을 인지
 - 2019.1.26. 23:15 유출 대상 1,613명에게 메일을 통해 유출사실 통지
 - 2019.1.26. 23:45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유출 신고
 - 2019.1.29. ~ 3.1. 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유출사실 공지

※ 고객안내 메일 발송 등은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을 통해 발송토록 변경함

2) 개인정보 유출 규모

4. 피심인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이메일 주소 1,613건이 노출되었다.

3) 개인정보 유출 경로

5. 피심인은 자격증 발급비용 상승에 따라 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비용 인상 안내” 제목의 이메일을 2019. 1. 25. 발송하면서, 1,613건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 사람’란에 기재하고 전체 발송하여 타인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일부 누락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3항)

6. 피심인은 2019. 3. 7. 기준 시험 신청자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동의를 받고 있으



나, 동의내용에 ①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을 일부 누락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동의 화면 >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7.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4. 1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침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침인은 2019. 4. 29.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3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제2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제3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제4호)’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법 제63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일부 누락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3항)

9. 피침인은 2019. 3. 7. 기준 시험 신청자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내용에 ①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을 누락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국외 이전	§63③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의 시 이용자에게 고지사항을 일부 누락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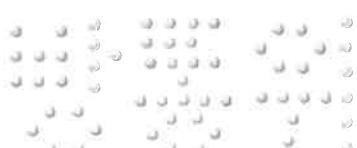
10.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1.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태료 부과

12.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우. 법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63조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5호	600	1,200	2,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63②	600만원	없음	300만원	300만원
계				3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16.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0,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17.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2항제5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8.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피침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4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옥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